

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. .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, 교통비 등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였음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조문 삭제

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1조 중 “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”을
“지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1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) 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(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)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	제11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지원 ----- -----.